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5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김용만 · 박상혁 · 박민규
박홍배 · 한민수 · 강준현
전현희 · 이강일 · 윤종균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를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반사업자의 규모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징금 부과の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본문, 제43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5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8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3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

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

100분의 10을

50억 원

② -----

-----200억

원-----

다.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 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

제53조(과징금) ① -----

-----20억원-----
-----.

② -----

-----100분의 30-----

-----200억원-----

-----.

③ -----

-----100분의 15-----

-----100억원-----

부과할 수 있다.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_____ •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과징금을 부과-----.

1. 2. (현행과 같음)

3. 위반사업자의 규모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과징금 부과の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본문,
제43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
문,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53
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
출액(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
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
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8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3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2항 본
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3항 본
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